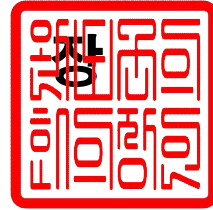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 조 영 식 의원
3. 개정이유
 - 군민들이 각종 문화창작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제공하고자 문화예술의 전당의 문화사랑방을 추가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항 개정

-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을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로 개정

5. 조례안예고기간 : 2024. 7. 5 . ~ 2024. 7. 10.

6.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을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9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 간	비 고
부분사용	4시간이내	※ 운영시간 - 하절기 : 09:00~22:00 - 동절기 : 09:00~21:00
종일사용	8시간이내	
전시장사용	09:00 ~ 21:00	

2.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간	사용료	
공연동 (공연장)	공연/대관	4시간이내	250,000	
		8시간이내	400,000	
	연습/준비	4시간이내	100,000	
		8시간이내	200,000	
문화동	3층	다목적실	4시간이내	40,000
			8시간이내	70,000
		평생학습실	4시간이내	30,000
			8시간이내	50,000
	1층	문화홀 (마주침공간)	4시간이내	100,000
			8시간이내	170,000
		소회의실 (주민자율공간)	4시간이내	20,000
			8시간이내	30,000
공연동 향토전시실		전시(15일이내)	200,000	
		기타행사 (1일)	80,000	

※ 사용가능한 부속시설 (장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3. 기타사항(문화홀, 소회의실)

- 문화홀과 소회의실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속 2일 이상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적 사용보다는 주민들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공기관(금융 기관 포함)은 사용일로부터 20일 전부터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의 사용신청)</p> <p>① 전당시설 중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 공연장, 전시실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p>	<p>제6조(시설의 사용신청)</p> <p>① ----- ----- -----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p>